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1. 7. 1.(목) 조간(온라인 6. 30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배포일시	2021. 6. 30.(수) 9:00	담당부서	과학기술정보분석과			
담당과장	김영은(044-202-6960)	담 당 자	오선영 주무관(044-202-6966)			
담당기관	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	술예측센터 이	동기 부연구위원(043-750-2561)			

「레벨 4 이상 자율주행」기술이 가져올 미래,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!

-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영향평가, 시민포럼 모집(21.7.1~7.14)

- 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과기정통부)는 '레벨 4 이상 자율 주행'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「시민포럼」 참여자를 7월 1일(목)부터 7월 14일(수)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.
- 「시민포럼」은 '레벨 4 이상 자율주행'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,
-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'레벨 4 이상 자율주행' 기술이 국민 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.
- □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·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,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.
- 올해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, 전문가 및 일반인 온라인설문,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'레벨 4 이상 자율주행'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.
- □ '레벨 4 이상 자율주행'은 운전자나 숭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로,

- o **주행환경** 및 **교통약자의 이동 편의**를 **증진**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, **해킹으로 인한 안전 위협** 및 **개인정보 유출**, 사고에 대한 **책임소재의 불명확성**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.
- □ 기술영향평가는 **전문가 관점의 「기술영향평가위원회」**와 **시민 관점의** 「시민포럼」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.
- 「기술영향평가위원회」는 과학기술 및 인문·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,
- 「시민포럼」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·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.
- □ 「시민포럼」 참여자 모집은 7월 1일(목)부터 7월 14일(수)까지이며,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(http://www.msit.go.kr)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(이하 'KISTEP', http://www.kistep.re.kr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*에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* KISTEP K2Base 홈페이지 접속(http://www.k2base.re.kr) → 함께+ → 기술영향 평가 → 공지사항 및 자료실 열람 → 의견 작성 게시판
- □ 향후, 11월 경에는 산·학·연 전문가 외에도 **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**하기 위해 **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**를 개최할 계획이다.
- □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"향후 **자동차 산업뿐만**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"하다며, "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."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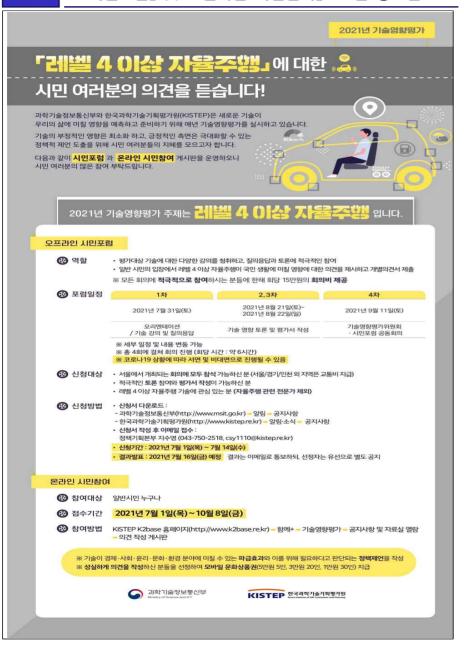
붙임: 「시민포럼」및 「온라인 시민참여」 모집 공고문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선영 주무관(☎ 044-202-69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「시민포럼」및 「온라인 시민참여」 모집 공고문



참고

기술영향평가 개요

□ 추진개요

○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(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)

평가 방법(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)

- (대상)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·경제적·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
- (주체)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, KISTEP에 위탁 · 실시 ※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
- (내용) ① 국민생활의 **편익증진** 및 관련 **산업발전**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 기술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·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**부작용 초래 가능성**이 있는 경우 이를 **방지할 수 있는 방안** 등

□ 추진경과

- ('01년)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**기술영향평가 의무화**
 - ※ '02년 : 기술영향평가 정의, 연구범위,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
- ('03~'20년) 총 21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
 - ※ '10년: 기술영향 평가주기 '매년' 으로 개정

연도	대상기술	연도	대상기술	연도	대상기술
'03	NBIT(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) 융합기술	'05	무선데이터송신장치(RFID) / 나노	'06	줄기세포 치료기술 / 나노 소재 / UCT(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)
'07	기후변화대응기술	'08	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	'11	뇌-기계 인터페이스
'12	빅데이터	'13	3차원 프린팅 /스마트 네트워크	'14	무인 이동체/ 초고층 건축물
'15	유전자가위/ 인공지능	'16	가상·증강현실 기술	'17	바이오 인공장기
'18	블록체인	'19	소셜 로봇	'20	정밀의료 기술

□ 추진절차

대상기술 선정 (대상기술 선정위원회) 대상기술 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(대상기술 분석회의) **전문가평가** (기술영향 평가위원회)

시민포럼

본라인 시민창구 부

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